

49. 투자금반환 청구

☐ 투자금반환(중첩관계,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기본형)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투자금반환 청구(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1은행, 주식회사 2은행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내지 208번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위 각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1은행, ○○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09번 내지 213번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투자금액 및 위 각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1은행, ○○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14번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위 원고의 투자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는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신탁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재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8조, 제56조 제1항, 제2항의 투자설명서에 관한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투자신탁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인 경우에 신탁약관의 내용과 결합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그 기재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 투자금반환 청구(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예비적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254,917,266원 및 그중 1,102,983,337원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예비적으로 930,206,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유효)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계약은 증권거래나 증권투자신탁거래와는 달리 투자의 대상이 주식등 유가증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그 본질상 투자손실을 투자자문회사의 위험부담으로 하거나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무효로 볼 이유가 없고, 증권거래법 제70조의6 제4호의 수익약정금지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질서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서울지법 1997.11.27. 선고 96가합27211 판결)